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86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행복주택의 미임대 해소를 위해 완화된 입주자격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으로 입주하게 된 자에 대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복주택 공급대상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입주한 자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일반”자격을 갖춘 자를 포함하고 부과기준 마련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팩스 : 044-201-55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전화 044-201-4513, 4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